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2020. 9.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112
----------	--------

2020. 9. 10.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의약과)
- 나. 제 안 일 : 2020. 8. 25.
- 다. 회 부 일 : 2020. 8. 26.

2. 제출이유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가 2015년 구성된 후 장기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안전이 발생하면 즉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하여 위촉위원의 임기(2년, 연임 가능) 및 해촉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제12조)
- 나.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제10조제3항의 회의 소집규정을 안전이 발생하면 즉시 소집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도록 신설함.
(안 제10조제3항).
- 다. 위원회의 실무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도 비상설화하고 위원의 임기(2년, 연임 가능) 관련규정 삭제함. (안 제13조제4항, 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0. 7. 16.~ 8. 5.(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2015년 이후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고 위원회의 존속사유가 없어져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8조제2항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성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함.
- 안 제10조제3항과 안 제13조제4항, 제5항은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자동해산 조항 신설과 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개정 목적성에 부합함.
- 안 제14조의 수당은 위원회 참석위원의 수당 여비의 지급 제외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과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의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현황 등이 반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9년 위원회 정비계획 검토 보고회’ 당시 재난안전 전담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 마포구협의회’에서 사회안전·생활안전·교통안전·학교안전 분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운영위원회”의 ‘마포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이라는 활동 목적과 중복되므로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감쇠된다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 존속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겠음.
-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현재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사업에 진행 여부도 파악하여 조례의 계속 유지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경위〉

- 2005년 자치구 건강·안전도시 시범사업계획 평가결과 안전도시 시범 사업구 선정 (마포구, 송파구)
 - ‘마포구 아동 및 청소년 손상현황 조사’ 를 실시
 - 국내 국제안전도시 인증 현황(국제안전도시 인증센터)
: 서울 송파구, 세종시 등 18개 시
- ※ 마포구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의 ‘건강도시’ 인증만 획득.

〈국제안전도시 공인 요건〉

- 각계각층의 상호 협력기반 구축
- 모든 성·연령·환경·상황별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 그룹 손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프로그램 운영
- 손상의 빈도 및 원인규명 프로그램 운영
- 손상예방 프로그램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속적 참여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